

현장 목소리 담아 특허심판 절차 개선

- 심판 조정 연계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였다.

<심판-조정 연계 절차 구체화>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심판-조정 연계 :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한 우선심판 제도 개편>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하였다.

<적시제출주의 절차 보완>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하였다.

서울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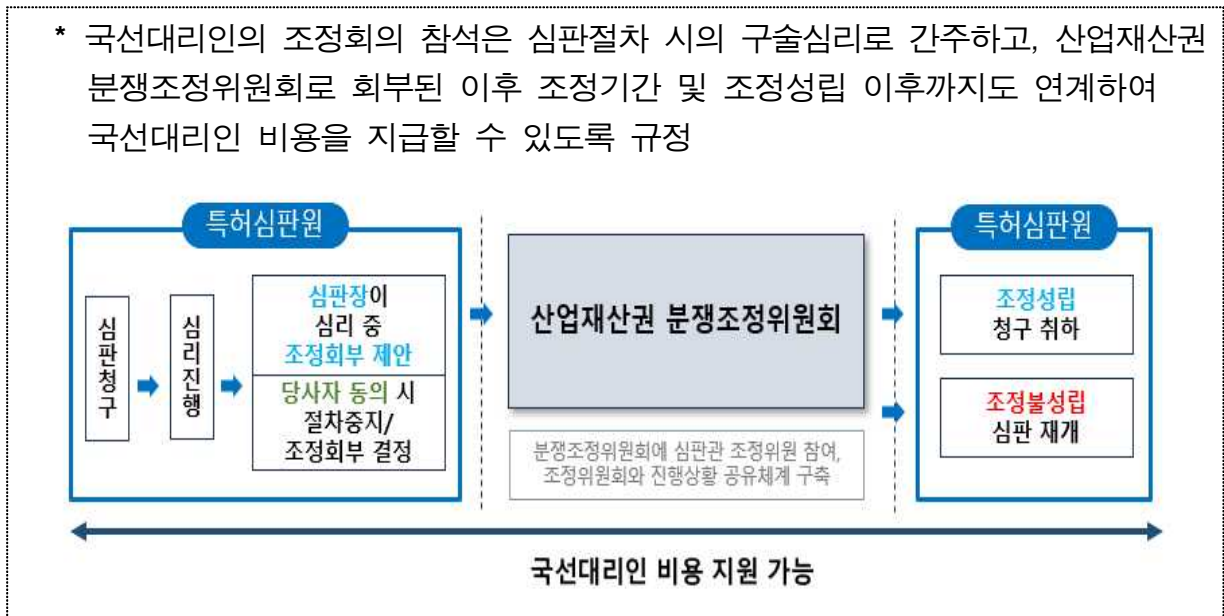
※ 붙임: 제도 개정 사항

담당부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진욱 (042-481-5879)
		담당자	사무관	조현주 (042-481-5583)

□ 심판-조정 연계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심판-조정연계사건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근거 마련

* 국선대리인의 조정회의 참석은 심판절차 시의 구술심리로 간주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조정기간 및 조정성립 이후까지도 연계하여 국선대리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우선·신속 심판 개편

- 「심판사무취급규정」: 일부 우선·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요건 개편

구분	대상	요건	비고
우선심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 경제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	신청에 의함	청구인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청구인에 의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신청 요건을 확인
신속심판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사건 관련하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 처리 유도
	특허출원일(실용신안 등록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청에 의함	기한 도래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의사를 반영